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517393(본소), 2016가단805748(반소) 판결 [약정
대금 청구 등 · 매매대금반환]

전 문

원고1. A

원고(반소피고)2. B

원고3. C

피고(반소원고)D

변론 종결2017. 7. 12.

판결 선고2017. 8.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C의 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1/10을
원고(반소피고) B이, 9/10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1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B은 피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부장, 대리, 차장의 직책을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편의 또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요청하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를 의뢰하여 그 대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 A은 2015. 12.경 소외 G로부터 별지 목록 1 차량(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고 한다)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경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는 소외 H에게 이 사건 1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고, 차량대금으로 7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H은 다마스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1 차량을 인수해 갔고, 이 사건 1 차량은 2016. 1.

20. 소외 I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 B은 2016. 1.경 소외 J으로부터 별지 목록 2 차량(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고 한다)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H에게 이 사건 2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차량대금으로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H은 이 사건 2 차량을 인수해 갔고, 이 사건 2 차량은 2016. 2. 18. 소외 K 앞으로, 같은 달 19. 소외 L 앞으로 소유자 명의가 순차 이전되었다.

마. 원고 C은 2015. 9.경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3 차량(이하 '이 사건 3 차량'이라고 한다)을 H에게 판매 의뢰하였고, 차량대금으로 1,0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H이 2015. 9. 30.경 이 사건 3 차량을 인수해 갔고, 2015. 12. 1. 이 사건 3 차량은 소외 M 명의로 이전되었다.

바. 이후 이 사건 1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6. 3. 18. 위 G에게 7,860,661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B은 2016. 3. 21. 위 J에게 990만 원 및 110만 원(당일 송금된 1,101,000원 중 1,000원은 송금 수수료로 보인다) 등 합계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13, 1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9.경부터 지속적으로 그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의뢰받아 직접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한 후 원고들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H을 통하여 이 사건 1, 2, 3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고 인수해 갔을 뿐만 아니라 H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약정한 차량대금으로 원고 A에게 75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원고 C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약정금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H이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자책임).

나. 원고 A,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 4, 7 ~ 10, 12,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H을 통하여 원고 A, B과 이 사건 1, 2 차량 판매대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H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라 H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 A, B으로부터 차량 매매를 의뢰받아 이 사건 1, 2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 5, 을 1, 2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H은 원고 A, B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1, 2 차량을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 중개를 하지 않고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소외 N의 명의로 중개를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¹⁾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원고 A, B이 위 차량들의 소유자인 G2), J으로 하여금 매수자 성명란에 피고가 아닌 제3자들을 기재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3, 4, 9, 1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의 업무인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한 사실, H이 원고 A, B으로부터 이 사건 1, 2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고 이를 인수하여 제3자들에게 판매하고도 약정한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6. 3. 2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들 판매대금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내기도 한 사실, H은 원고 A, B으로부터 이 사건 1, 2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1, 2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 H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도 H이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중고차 매매딜러를 하던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전에도 원고 A, B은 H을 통해서 피고에게 차량 매매를 의뢰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그 차량대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H이 원고 A, B으로부터 이 사건 1, 2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H이 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1, 2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H의 사용자로서 원고 A,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6. 3. 18. 이 사건 1 차량의 소유자였던 G에게 7,860,661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은 2016. 3. 21. 이 사건 2

차량의 소유자였던 J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 B은 H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이 구하는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은 이 사건 1, 2 차량 소유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차량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한편 피고와 H 사이에는 법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A, B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중고차 딜러인 H 개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H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 B이 직접 H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1, 2 차량을 H에게 판매 의뢰하여 차량을 편취 당하고, 이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1, 2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H은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³⁾,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C이 2015. 9.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3 차량을 H에게 판매 의뢰하였고, 차량대금으로 1,0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의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H이 원고 C에게 '이 사건 3 차량을 대신 판매해주고 그 돈을 내가 잠시 사용한 후 이자를 붙여 1,1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H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도 그 차량대금을 원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제출한 갑 1, 3, 4, 6, 7-3, 9, 10, 12, 15-1 ~ 15-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에게 이 사건 3 차량 매매와 관련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거나 H이 원고 C에게 이 사건 3 차량 판매대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H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 C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즉 H이 원고 C으로부터 이 사건 3차량의 판매대금을 빌린 행위는 H이 수행하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B이 2016. 1. 25.경 자기 소유의 아반떼 중고차량(차량번호 O)을 넘길테니 1,1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등을 피고에게 보내주어 피고는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구두약속한 후 원고 B에게 차량대금으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원고 B이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서 이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B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 B과 사이의 위 아반떼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차량대금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은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5. 원고 B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11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원고 B이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가자 피고에게 위 차량이 매입할 차량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이에 속은 피고가 원고 B의 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H이 원고 B에게 '차 대금을 네 통장으로 받을 테니 나에게 다시 보내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위 피고가 1,1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H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4 ~ 6(을 5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는 위 1,100만 원 입금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6. 3. 17. F에서 출력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 B이 위 아반떼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나 H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와 사이에 위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매매약정을 한 사실과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위 차량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위 입금된 금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C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하정

별지

- 1)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차량은 N의 대표인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2)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G이 피고를 매수자로 기재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G이 소유하던 이 사건 1 차량은 2016. 1. 20. I 명의로 이전된 점, G의 위 인감증명서는 그 이후인 2016. 2. 16.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이미 2016. 1. 20.경 매수자 성명란에 I을 기재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그에 따라 원고 A, B이 직접 H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